■ 약사법 시행규칙 [별지 제8호서식] <개정 2024. 11. 7.>

# [ ]약국 [ ]폐업<br>[ ]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[ ]휴업 신고서<br>[ ]의약품 판매업 [ ]업무재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| 접수번호 | 접수일자 | 발급일자 | 처리기간 7일 (다만, 약국 관련 신고는 3일) |
|---|---|---|---|

| | | |
|---|---|---|
| 신고인 | 성명 | 생년월일 |
| | 명칭 | 전화번호 |
| | | 전자우편 |
| | 소재지 | 등록번호 |

| | | |
|---|---|---|
| 신고내용 | [ ]약국 (요양기관기호: ) [ ]의약품 판매업 [ ]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| |
| | 폐업연월일(약국은 최종영업일 익일로 작성) | 년 월 일 |
| | 휴업예정기간 | 업무재개 연월일(약국은 휴업종료일 익일로 작성) 년 월 일 |
| |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( )<br>(※ 약국개설자 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만 작성합니다) | |
| (※ 약국만 작성합니다) | 휴업 또는 폐업 후 연락처 | (주소)<br>(전화번호)<br>(전자우편) |
| | 휴업 또는 폐업 사유 (※ 신청대상 번호란 [ ]에 "√" 표시) | 01대표자 사망[ ] 02고령(건강상)[ ] 03학업목적[ ] 04경영상[ ] 05취업[ ]<br>06소재지 이전[ ] 07면허취소[ ] 08기타[ ] |

「약사법 시행규칙」 제12조제1항·제2항, 제24조제1항·제2항 및 제41조제1항·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약국,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및 의약품 판매업의 폐업·휴업·업무재개를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**시장·군수·구청장** 귀하

| | | |
|---|---|---|
| 제출서류 | 약국개설등록증(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)<br>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<br>의약품 판매업 허가증<br>※ 약국개설자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경우 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첨부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<br>※ 폐업신고의 경우에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때에는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 | 수수료 없음 |

## 유 의 사 항

약국 폐업 또는 휴업, 업무재개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(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2조제3항).

## 처리 절차

신고서 작성 → 접수 → 검토 → 기안·결재 → 허가증 뒷면 기재 → 통보

신고인 처 리 기 관: 시·군·구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